

전주지방법원 2024. 7. 15 선고 2023나137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4. 7. 15 선고 2023나13742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1가단758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수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김학수, 윤희준, 한지영

변론종결 2024. 5. 20.

판결선고 2024. 7. 15.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1가단7582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C 답 1,112㎡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9. 11. 27. 접수 제101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 및 쌍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규, 판사 천무환, 판사 구나영